

2016년도 제1회 전문경력관 다군(X-Ray 검색 및 판독) 경력경쟁채용 공고

2016년도 제1회 관세청 전문경력관 다군(X-Ray 검색 및 판독 담당)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6년 3월 2일

관 세 청 장

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근무예정기관	주요업무
전문경력관	전문경력관 다군 (X-Ray 검색 및 판독 담당)	11명	전국세관*	X-Ray 검색·판독 등

* 인천세관, 부산세관, 평택세관, 속초세관 등(향후 변경 가능)

2 법적 근거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 제2항
- 「전문경력관규정」 제6조 내지 제16조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7조 및 제29조

3 채용자격 요건

- 공통요건
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고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 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*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
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1996.12.31. 이전 출생자)

○ 응시자격

- 다음 1.~4.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

직무분야	임용자격
X-Ray 검색 및 판독	<p>1. 비파괴검사 기술사,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,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(3년),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능사(4년), 정보보안 기사, 정보보안 산업기사(3년)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사람</p> <p>* 위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</p> <p>*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() 안의 기간 이상 관련 직무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</p> <p>* "경력"이란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,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. 이하 같음.</p> <p>2.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* "임용예정 직위"는 전문경력관 다군(X-Ray 검색·판독 담당)을 말함. 이하 같음.</p> <p>3.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4.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</p> <p>* "관련 학과"란 방사선학과, 비파괴검사학과, 정보보안학과를 말함</p> <p>* "졸업자 등"이란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</p>

*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원서접수 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

4 신분 및 보수수준

- 『국가공무원법』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
- 보수는 『공무원보수규정』, 『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 등 관련규정 적용

5 시험 방법

가. 1·2차 시험(병행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
- 시험과목
 - 총 3개 과목 : 영어, 사회, 관세법개론
- 과목별 문항·점수 : 100문항, 300점 만점

구분	시험과목	문항수	배 점	점 수	비 고
1차 시험	영어	30	3.3	100	객관식 선택형 (4지)
	사회	30	3.3	100	
2차 시험	관세법개론	40	2.5	100	

- 출제범위 및 난이도
 - 영어·사회 :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준함
 - 관세법개론 : 현행 관세법 전문(제2장 제4절, 제3~5장, 제7~8장 제외)

< 관세법 제외 범위 >	
제2장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	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
제4장 감면·환급 및 분할납부 등	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
제7장 보세구역	제8장 운송

- 합격자 결정
 - 과목당 4할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.5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

나. 3차 시험 : 서류전형

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
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

다. 4차 시험 : 면접시험

- 3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, 중,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

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'상', '중', '하'로 평정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('상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)
- ※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(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)

▶ 불합격 기준

-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'하' 평정
-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 평정

6 시험 일정

구분	원서접수 및 취소기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1·2차 시험 (필기시험)	'16.03.21(월)~3.25(금) (취소마감 : 3.30. 18:00)	'16.03.31(목)	'16.07.09(토)	'16.07.15(금)
3차 시험 (서류전형)				'16.07.22(금)
4차 시험 (면접시험)		'16.07.15(금)	'16.07.28(목)	'16.08.03(수)

* 공고방법 :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customs.go.kr>) 게재

7 응시원서 접수

가. 응시원서 접수기간

- 2016. 3. 21(월) ~ 3. 25(금) 18:00
-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(다만, 마감일은 18:00까지)

나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: 인터넷 접수만 가능

-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(<https://ctc.customs.go.kr>) → 시험정보 → 응시원서 접수 → “전문경력관 다군 경력경쟁채용시험” 선택

- 응시원서 사진 : 해상도 100 이상, 규격 3.5cm×4.5cm, 파일형식 jpg,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(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발생)
- 응시자격 증빙서류 :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pdf 형식 파일로 업로드
 - * 채용요건 관련 자격증, 채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

다. 응시수수료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5조(응시수수료)에 따라 5천원 상당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
- 응시수수료(5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(계좌이체 비용)이 소요됨
- 저소득층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)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(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)
-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

8 가산특전

가.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○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자격증소지자	과목별 만점의 0.5%~1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○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‘나~다’ 참고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

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다.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

-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다음 표 가산비율) 상당 점수 가산 (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)

구분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
	1%	0.5%
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2급

*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

라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
 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(10% 또는 5%)과 보훈번호 입력
 - 자격증의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(보훈번호)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
-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,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

9 유의사항

-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,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시키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-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,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,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,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담당자 이메일 : dwlee@customs.go.kr, kwt1377@customs.go.kr
 - 전화번호 : (관세청) ☎ 042-481-7673, (연수원) ☎ 041-410-8517